

【붙임6】

기준면적 적용 공간 및 제외 공간 (예시)

1. 본청 청사 면적

가. 본청청사 기준면적 적용 대상

- 1) 사무공간 : 단체장, 부단체장실, 실국장(급)실, 과장(급)실, 계장(급), 직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
- 2) 사무지원공간 : 대강당, 회의실, 영상회의실, 자료실, 문서고, 체력단련실, 동아리방, 샤워/탈의실, 휴게실, 의무실, 식당, 매점, 문구점, 이발소, 법률자문실, 숙직실, 경비실, 민원실, 민원콜센터, 안내실, 창고, 민방위대피실, 민방위교육장, 전산실, 직원 전산교육장, 방송실, 통신실, 중앙관제실, 방재센터, 상황실, 영상실, 사진실, 편집실, 고시편집실, 발간실, 열람실, 인쇄실, 기자실, 브리핑실, 지가조사실, 통계작성실, 감사실, 홍보관, 기타 시설
- 3) 건물설비공간 : 공조실,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, UPS실, 코아설비, 가스정압실, 유류탱크실, 물탱크실, 중수처리실, 오수설비실, 쓰레기처리장, 신재생설비실, 기타 시설
- 4) 공용공간 : 현관, 복도, 계단, 로비, 홀, 라운지, 화장실, 엘리베이터, 기타 시설

나. 본청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

- 1) 외부기관 :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·소속기관,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·조사실, CCTV관제센터 등
- 2) 임대공간 : 국가기관, 공사·공단, 법인·단체, 이북5도, 민주평통, 예비군중대, 기동대/지역대, 상공회의소, 자원봉사센터, 위원회, 협의회, 공무원연금매장, 직원공제회, 상담센터, 기타 시설
- 3) 주민편의공간 : 도서관, 독서실, 체육관, 수영장, 전시실, 공연장, 노인복지회관, 청소년수련관, 문화강좌실, 스포츠센터 등
- 4) 법적의무설치공간 : 어린이집, 충무시설, 재난상황실, 기록관, 민방위경보통제소, 재해구호물자창고, 소방상황실, 모자휴게실 등

2. 의회 청사 면적

가. 의회청사 기준면적 적용대상

- 1) 사무공간 : 의장실, 부의장실, 위원장실, 의원실, 사무처장(국과장급)실, 전문위원실, 담당관(과장급)실, 계장(급), 직원·지방의원 등이 사무를 보는 공간
- 2) 사무지원공간 : 본회의장, 방청석, 지방의원·위원회 사무실, 대강당, 회의실, 영상회의실, 자료실, 문서고, 의원대기실, 의원휴게실, 체력단련실, 체력단련실, 동아

리방, 샤워/탈의실, 휴게실, 의무실, 식당, 매점, 문구점, 이발소, 법률자문실, 동시
통역실, 속기사실, 기자실, 브리핑실, 통계작성실, 감사실, 숙직실, 경비실, 방청객
휴게실, 민원실, 민원콜센터, 안내실, 창고, 전산실, 방송실, 통신실, 음향조정실, 조
명조정실, 편집실, 발간실, 열람실, 인쇄실, 영상실, 사진실, 중앙관제실, 방재센터,
지가조사실, 홍보관, 기타 시설

3) 건물설비공간 : 공조실, 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, UPS실, 코아설비, 가스정압실,
유류탱크실, 물탱크실, 중수처리실, 오수설비실, 쓰레기처리장, 신재생설비실, 기타
시설

4) 공용공간 : 현관, 복도, 계단, 로비, 홀, 라운지, 화장실, 엘리베이터, 기타

나. 의회청사 기준면적 제외면적 대상

1) 외부기관 : 지방자치단체 하부행정기관·직속기관,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실·조
사실, CCTV관제센터 등

2) 임대공간 : 국가기관, 공사·공단, 법인·단체, 이북5도, 민주평통, 예비군중대,
기동대/지역대, 상공회의소, 자원봉사센터, 위원회, 협의회, 공무원연금매장, 직원
공제회, 상담센터, 기타 시설

3) 주민편의공간 : 도서관, 독서실, 체육관, 수영장, 전시실, 공연장, 노인복지회관,
청소년수련관, 문화강좌실, 스포츠센터, 기타 시설

4) 법적의무설치공간 : 어린이집, 충무시설, 재난상황실, 기록관, 민방위경보통제소,
재해구호물자창고, 소방상황실, 모자휴게실 등

3.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 면적

: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무실, 비서실, 접견실, 대기실, 탕비실, 자료실, 회의실(지방자
치단체의 장 집무실과 연결되어 출입하는 공간 등) 등